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44

발의연월일: 2020. 8. 21.

발 의 자:김윤덕·이형석·허 영

민병덕 • 안호영 • 신영대

민홍철 · 정춘숙 · 박재호

강훈식 • 박영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는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경제산업구조로 현재 온실가스 · 미세먼지 등 탄소 중심의 경제산업구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역시 경제산업구조를 수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용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통한 수소 활용의 활성화 또한 이에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수소의 생산 및 저장·운송체계가 고 도화되지 못해 수소의 가격이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기존의 에너지 원에 비해 비싼 편이어서, 운송사업자등이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도 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보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장・군수 등이 운송사업자등에게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 충

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연료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44조제3항 중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제1호 중 "석유판매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을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충전사업자"를 "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류의"를 "유류 또는 수소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유류분"을 "유류분 또는 수소 구매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유류"를 "유류 또는 수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유류"를 "유류 또는 수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58조 본문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제3호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68조 중 "제43조제2항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재정지원) ①・② (생	제43조(재정지원) ①・② (현행과
략)	같음)
<u><신 설></u>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u>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u>
	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
	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
	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
	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u>수 있다.</u>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②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	③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	<u> 규정</u>
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	
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	

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 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 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 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 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 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설유판매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의

	시
	-
	· —
	<u>덕</u> 의
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 약전관리법」 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u>간</u>
2 <u></u>	王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 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 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 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 카드"라 한다)로 거래를 하거 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 금을 지급받은 경우

-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u>유류분</u>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 우
-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 급받은 경우
- 5. 그 밖에 <u>제43조제2항</u>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 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6. (생략)
- ② ~ ⑤ (생 략)

제58조(압류금지) 제40조제3항에 제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u>는 수소의</u>
3
유류분 또
는 수소 구매분
4
유류 또는 수소
5 <u>제43</u> 조제2항 또는 제
<u> 3 ক্ট</u>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58조(압류금지)

현물	출자된	차량	및 <u>제</u>	432	조제2
<u>항</u> 에	따라 >	지급된	금품	과	이를
받을	권리는	· 압류	하지	못	한다.
다만,	현물출	들자된	차량	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 •	과태	豆	미납
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	을	압류
하는	경우에	는 -	1러하	ス	아니
하다.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u>제43조제2항</u>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 4. (생략)
- ② (생략)
-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① (생략)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

		제43소	제2
항 또는 제3항-			
•			
제60조의2(신고포	상금	지급	등)
①			
	·		
1.・2. (현행과	_ ,		
3			
제43조제2항	또는 저	<u> 3항</u>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left(\frac{1}{1}\right)$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1 (इ	현 행
과 같음)			
2			

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
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
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68조(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 전 법으로 제43조제2항의 화물자 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제43조제2항 및 제3항</u>
③ (현행과 같음)
제68조(벌칙)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보조금